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4. 1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4월 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4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4년 4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가. 제안이유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감량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중 일부용어 신설(안 제2조)
-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사항 중 내용 보완 (안 제6조)

- 조치명령 기간 변경 (3개월 범위 ⇒ 1개월 범위)
-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중 내용 개선(안 제9조)
 - 연탄재 : 가정 외 배출 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2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중 내용 개선(안 제34조)
 -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중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지급 제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청소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장비 지원, 표창 및 그 밖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깨끗한 마을을 가꿀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존 토지·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게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내리던 것을 1개월로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환경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판단됨.

생활폐기물 중 음식점 등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연탄재 배출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여 기존의 배출방법을 보완하여 시행하려는 조치라 여겨지며,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관한 지원규정이 현행 조례에서는 규격봉투로만 한정되어 있어 감면대상자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감면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포상금 지급기준에서는 기존의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증거가 불

충분할 경우에도 신고내용 판단여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 또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조례에 반영함.

- 본 개정조례안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88 호
----------	---------

제출연월일 : 2014.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감량화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중 일부용어 신설(안 제2조)
- 나.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 다.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라. 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사항 중 내용 보완 (안 제6조)
 - 조치명령 기간 변경 (3개월 범위 ⇒ 1개월 범위)
- 마.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중 내용 개선(안 제9조)
 - 연탄재 : 가정 외 배출 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바.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2조)
- 사.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중 내용 개선(안 제34조)
 -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중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지급 제한
- 아. 그 밖에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반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3.6.~2014.3.26,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것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 폐기물"이란 폐토사,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을 말하며 그 밖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금속류, 폐유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

한다)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민원성 폐기물”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거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반입이 규제되는 소량의 카펫, FRP, PVC, 페인트통, 페타이어, 장관, 고무호스, 폐합성수지, 폐비닐, 고무, 가죽 또는 페스치로폼 등의 폐기물로서 종량제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개별개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8. “종량제 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말한다.

9. “재사용 종량제 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관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영등포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우수 참여자(단체) 또는 기여자(단체)에게 장비 지원·표창 및 그 밖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 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 제25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

④ 대행구역 또는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그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처리 또는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제13조에 따라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민원성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종량제폐기물 :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한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사용

2. 연탄재 :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게 순수한 연탄재만 상자 등의 용기에 담아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3. 대형폐기물 : 배출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관찰 동장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신고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일시·장소에 배출한다.

4. 민원성폐기물 : 배출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폐기물의 종류·배출량 등을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라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

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규칙 제14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건설폐기물(5톤 미만)과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허가를 득한 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한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제8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

의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항을 정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 수수료 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폐기물수수료 종량제실시

제13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종량제실시 대상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배출량과 종류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 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사업장 생활계폐기물용·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에 담는다.

④ 특수 규격봉투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건설폐기물(5톤 미만)과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 민원성폐기물을 담는다.

⑤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

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용 규격봉투는 녹색, 특수 규격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봉투는 옅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16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5조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금액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5.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규격봉투대금의 고지 수납으로 선·후납제를 병행 시행하고, 후납제는 봉투판매소에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채권확보)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봉투공급에 대한 후납제의 경우 연대 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정보증인은 서울시내 거주자로서 1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세자로 하며 보증보험금액은 계약일전 2개월간 공급한 규격봉투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봉투판매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일 기준 최근 2개월간 공급받은 규격봉투대금의 총액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소에서 한다.

제5장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이하 "처리비"라 한다)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처리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6조(종량제 수수료) ① 규격봉투 가격은 제작비, 수집·운반수수료, 처리비, 판매이윤으로 구성한다.

②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공급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제작비와 처리비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제작비와 처리비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를 공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시분으로 고지한다.

제27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처리) ①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가정용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으며, 이외의 품목은 용도, 재질, 규격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할 동장 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지정된 장소에(중간집하장) 운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구청장에게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환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거나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환불하되, 신고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환불한다.

제28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 처리비는 배출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부과·징수하여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9조(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납기 등) ① 수수료 등의 징수는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여 징수한다.

② 수수료 등의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공공장소에서의 집회·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집회·행사의 주관자·주최자로부터 사전에 예치 받을 수 있다.

④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또는 전자 지불 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하며,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제 제9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관

리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출신고서에 영등포구 수입증지(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상 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자지불 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 또는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해당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30조(가산금 등) ① 제22조에 따라 봉투대금을 납부기한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등포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② 폐기물처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규격봉투 제작비와 처리비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비를 납부기한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2조(감면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 및 지원할 때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3조(과태료) 구청장이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제33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대상은 별표 5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행위를 신고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
2. 투기 행위자의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
3. 투기 행위자의 위반행위 내용
4. 사진·동영상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위반사항은 1건으로 처리한다.

⑥ 동일인 신고 시에는 월 20건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서울특별시 OCR처리용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의견진술)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3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7장 보칙

제4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규격봉투가격(제13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제작비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비	판매이윤	판매가
생 활 폐기물 규격봉투	5 ℓ			10	5	90
	10 ℓ			20	10	180
	20 ℓ			40	20	360
	30 ℓ			58	30	540
	50 ℓ			84	50	900
	75 ℓ			137	75	1,350
	100 ℓ			177	100	1,800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용	10 ℓ			50		210
	20 ℓ			100		420
	50 ℓ			254		1,080
	75 ℓ			382		1,610
	100 ℓ			507		2,150
특수규격 봉 투	50 ℓ			1,324	180	2,430

비 고 : 규격봉투에 포함된 처리비 및 제작비는 수도권매립지운영 관리조합 등에서 고시하는
반입료 등이 변동될 경우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됨.

[별표 2]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 15조제 2호 관련)

용량(ℓ)	용도
5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1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2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30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5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7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10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원)

연번	품 목 명	규 격	부과금액	비 고
1	오디오본체	대형(높이1M이상)	5,000	
2		소형(높이1M미만)	3,000	
3	오디오스피커	1개당	1,500	
4	오디오장식장		2,500	
5	정수기	20ℓ 이상	5,000	
6		20ℓ 미만	3,000	
7	전기밥솥	10인 이상	2,500	
8		10인 미만	2,000	
9	VTR (DVD포함)		3,000	
10	카세트라디오		1,500	
11	다리미		1,000	
12	다림질 판		1,000	
13	헤어드라이		1,000	
14	선풍기	업소용	2,500	
15		가정용	1,800	
16	전화기		1,000	
17	청소기	가정용	2,000	
18		업소용	3,500	
19	자동판매기	대형	14,000	
20		소형	5,500	
21	냉장고	500ℓ 이상	9,500	
22		300ℓ 이상	7,100	
23		300ℓ 미만	4,800	
24		업소용	15,000	
25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6,000	
26		12인치 이상	3,600	
27	텔레비전 받침		2,500	
28	세탁기	6kg 미만	3,600	
29		6kg 이상	5,000	
30	탈수기		2,400	
31	공기청정기	높이1m 이상	2,400	
32		높이1m 미만	2,000	
33	가습기		1,500	
34	보일러	16,000cal/h 이상	10,000	
35		16,000cal/h 미만	7,500	
36	보일러 기름 탱크		2,000	
37	온풍기	80평 이상	8,500	
38		20평 이상	5,500	

39		20평 미만	3,500	
40	에어컨	80평 이상	9,000	
41		20평 이상	6,000	
42		20평 미만	4,000	
43		전기난로	2,400	
44	난로	석유난로	2,500	
45	팬히터	벽걸이형	2,000	
46	썬크대	60cm 미만	3,500	
47	개수대		4,000	
48	밥상	4인 이상	2,500	
49		3인 이하	1,000	
50	교자상		2,000	
51	쌀통		3,600	
52	녹즙기		2,000	
53	식기건조기		1,500	
54	식기세척기		3,500	
55	믹서기		1,500	
56	김치 독	용기 류 제외	4,000	
57	환풍기	가정용	1,500	
58		업소용	2,500	
59	전자레인지		2,500	
60	가스 오븐렌지	높이 1m이상	4,800	
61		높이 1m미만	2,400	
62	가스렌지		2,500	
63	식탁	5인 이상	4,500	
64		4인 이하	3,500	
65		3인 이하	2,500	
66	스탠드 옷걸이		2,000	
67	서랍장	5단 이상	4,800	
68		4단 이하	2,400	
69	화장대		3,600	
70	신발장	높이 120cm이상	3,500	
71		높이 120cm미만	2,400	
72	문갑		3,600	
73	장식장		4,800	
74	찬장, 진열장		3,500	
75	회의용 탁자	10인용 이상	9,000	
76		10인용 미만	6,000	
77	응접탁자		2,000	
78	장롱	120cm(4자) 1쪽	17,900	
79		90cm(3자) 1쪽	11,900	
80	아기옷장		3,000	
81	소파	1인용	2,400	
82		2인용	6,000	
83		3인용	7,500	
84		4인용	10,000	
85	의자	1인용	2,000	

86		2인용	4,500	
87		3인용	6,000	
88	침대	1인용 세트	11,900	
89		1인용 매트리스	6,000	
90		1인용 침대 틀	6,000	
91		2인용 세트	17,900	
92		2인용 매트리스	9,500	
93		2인용 침대 틀	8,000	
94		유아용	3,000	
95	자석매트	침대 매트리스 규격	침대 가격 적용	
96	팩시밀리		3,000	
97	복사기		9,500	
98	세단기		4,500	
99	책장	90cm×180cm 이상	8,500	
100		90cmx180cm 미만	5,000	
101	책꽂이	3단 미만	1,500	
102		3단 이상	3,000	
103	캐비닛		4,800	
104	파일 캐비닛	4단 이상	3,600	
105		3단 이하	2,400	
106	책상	양쪽서랍	8,300	
107		한쪽서랍	4,800	
108		컴퓨터	3,000	
109	피아노	일반	17,900	
110		디지털	5,500	
111	오르간		4,800	
112	컴퓨터본체		4,000	
113	컴퓨터모니터	20인치 이상	3,000	
114		20인치 미만	2,000	
115		LCD	2,000	
116	컴퓨터 자판		1,000	
117	노트북컴퓨터		3,000	
118	프린터	최대 A4 이하	3,000	
119		최대 B4 이상	4,000	
120	카펫	1평당	2,000	
121	장판	1평당	1,000	
122	돛자리	1평당	1,000	
123	전기담요		2,000	
124	이불	1채당	2,000	
125	인형 류	1개당	2,000	
126	장난감 류	1개당	1,500	
127	어항	가로1m높이60cm 초과	6,000	
128		가로1m높이60cm 이하	4,000	
129	목욕탕 수건 함		1,000	
130	재봉틀		2,500	
131	거울	높이 50cm 이상	1,500	
132		높이 50cm 미만	1,000	

133	가방류	높이 50cm 이상	2,500	
134		높이 50cm 미만	1,500	
135	골프가방		3,000	
136	금고		2,000	
137	병풍	2폭 당	1,000	
138	화분	PVC 2개당	1,000	
139	항아리	높이 30cm 이하	1,000	
140		높이 30cm 초과	2,000	
141	세면대		3,000	
142	욕조		6,000	
143	물탱크	15인용 이상	14,000	
144		15인용 미만	6,500	
145	변기		4,500	
146	비데		1,000	
147	쓰레기통	가정용	1,000	
148		사무실용, 옥외용	2,000	
149	유모차		2,400	
150	보행기		2,000	
151	유아용목마		1,000	
152	시계	대형	2,500	
153		소형	1,000	
154	액자	대형	2,000	
155		소형	1,000	
156	자전거	성인용	3,600	
157		아동용(이륜)	3,600	
158		아동용(삼륜)	2,400	
159	문짝	1개당	2,000	
160	폐목재	1kg당	200	
161	폐플라스틱	1kg당	200	
162	고무통	대형	3,000	
163	타이어	대형(1100mm 이상)	11,000	
164		중형(600~1100mm)	5,000	
165		소형(600mm 미만)	3,000	
166	유리	m ² 당	2,000	
167	오락기	업소용	10,000	
168		가정용	3,000	

[별표 4]

봉투판매소 구비서류 (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구 비 서 류
보증인 설정의 경우	서울시내 거주자로서 연100,000원이상 재산세납세자 1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1부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p>계약일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공급받은 규격봉투대금의 총금액을 초과하는 보증보험증권 1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원미만 -보험가입금액:100만원 └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보험가입금액:200만원 └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보험가입금액:300만원 └ 300만원이상 -보험가입금액:400만원 <p>※계약일 현재 규격봉투대금이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400만원으로 하며, 신규계약 하는 판매소는 인근판매소에 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한다.</p>

[별표 5]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제33조 관련)			
부 과 항 목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가.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2)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2)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8조제3항)	30	70	100
3.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			
가.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2)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3)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4)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부 과 항 목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5)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300	500	700
(6)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흩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7)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8)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9)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경우	400	600	1,000
(타) 의료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1)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가)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다)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타)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타)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4)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5)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부 과 항 목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1)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500	700	1,000
(2)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400	600	800
(3)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라.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400	600	800
4.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법 제13조의3제2항)	500	700	1,000
5.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경우(법 제14조제5항)	100	200	300
6.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 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 종량제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자 (조례 제11조제1항)	10	20	30
(2)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자 (조례 제11조제1항)	10	20	30
(3) 재활용가능품을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한 자 (조례 제11조제4항)	10	20	30
(4) 생활폐기물을 담은 종량제봉투를 지정된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 이외에 배출하여 청소환경을 해치는 자(조례 제11조제5항)	10	20	30
(5) 생활폐기물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 자(조례 제12조제2항)	10	20	30
(6)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자	10	20	30

부 과 항 목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7.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법 제 17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8.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법 제17조제2항)	300	600	1,000
9.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17조제2항, 제 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	100	200	300
10.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제5항)	100	200	300
11.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경우(법 제18조제2항)	100	200	300
12.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법 제18조제3항이나 제 24조의3제2항)	50	70	100
13.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	300	300	300
14.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2항)	100	200	300
15.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경우(법 제25조제9항)	500	700	1,000
16.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제9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수집·운반한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부 과 항 목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2) 운반비·처분비·재활용비 또는 운반·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3) 운반비 및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0	700	1,000
(4) (2)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300	500	700
(5)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한 내에 사후정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말한다)	500	700	1,000
마. 수집·운반능력,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바.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	500	1,000
1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법 제29조제4항)	100	100	100
18.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			
가.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2)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3)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4)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나. 가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1)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700	1,000	1,000

부 과 항 목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2)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3)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라.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1)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2)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3)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마. 라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바.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사.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19.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1항)	300	500	1,000
20.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	50	70	100
21.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36조제1항)	100	100	100
22.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23.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다만, 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8조제1항)	50	70	100
24.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법 제38조제1항)	100	200	300
25. 보고서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2항)	300	600	1,000
26.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3항)	50	70	100
27.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법 제39조제1항)	50	70	100
28.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9조제1항)	100	100	100
29.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	1,000	1,000	1,000
30.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7항)	300	300	300

부 과 항 목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31.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8항)	1,000	1,000	1,000
32.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9항)	100	100	100
33.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변경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0항)	100	100	100
34.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6조제6항)			
가.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라.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마.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35.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법 제46조제7항)	500	700	1,000
3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1항)	100	100	100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6]

무단투기자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기준(제34조제7항 관련)

지 급 기 준	금 액	비 고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한 자	전당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 특기사항 기재)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폐기물관리법)

【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시		내 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의견진술 기간	까지	의견진술 장소	
위반행위자 서명			단속공무원 확인			
20 년 월 일						
특기사항						

※ 표의 뒷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 서식 갑·을 및 병·정·무를 각각 복사용 먹지 부착 인쇄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의견진술기간	까지	의견진술장소
위반행위자 서명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인)

(정)

(개인통지용)

【과태료 납부영수증】						
회 계 년 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취급자인	

(무)

(구청 통보용)

【과태료 납부영수필 통지서】						
회 계 년 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p>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수납은행 :</p>						
수납날자도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금액		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①고 지 금 액	②취소(변경)액	③차 액	비 고

취 소 (변경)사유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부 과 기 준		⑥납부통지서번호
	⑤고지받은일자		⑦과 태 료 금 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수 신	발신 : 영등포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p style="text-align: center;">1. 「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⑥과태료금액
	⑤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p>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p> <p style="padding-left: 20px;">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p>			

<별지 제8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즉 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배출내역	품 명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배출예정일			배출장소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동장 귀하</p> <p>※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 시는 본인계좌로 무통장 입금 처리되오니 환불요청 시는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p>						
수입증지 첨부란						

〈별지 제10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3 일	
신 고 일 자			신 고 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 내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기납부수수료	환불신청액	비고	
					원	원		
					원	원		
					원	원		
	합계				원	원		
환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동장 귀하</p>								

